



금산군의회
GEUMSAN COUNTY COUNCIL

2026. 4. 21.(화)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

의안 검토보고서

검토안건

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금성

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40호
- 제 출 자 : 금산군수
- 제 출 일 : 2026. 4. 10.
- 회 부 일 : 2026. 4. 10.

2.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출자출연법」과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구조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군 대행이나 위탁 사업에 대한 근거 조문을 마련하여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에 대한 효율성·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 중 ‘군의 대행이나 위탁 사업’ 조문 추가(안 제9조)
- 정관의 제정·변경, 기본재산 처분 등 사항 정비(안 제10조)
 - (기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 ‘승인’
 - (개정) 군수 ‘협의’
-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2조)
 - (기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후 승인’
 - (개정)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
- 기타 용어 표기 정비(안 제1조, 안 제8조, 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제18조, 제21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타
 -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 해당없음(기획예산과-3385)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예산과-3248)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정책과-8370)
 - 입법예고(2026. 2. 20. ~ 2026. 3. 12.) : 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재단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0조, 제12조에서는 기존의 ‘군수 승인’ 절차를 ‘군수와 협의’ 또는 ‘군수에게 보고’로 개정하였음. 이는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및 제18조에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변경은 ‘협의’, 예산성립은 ‘보고’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단의 경영 자율성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9조에는 ‘군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재단이 단순 장학금 지급을 넘어 지역 교육 발전의 실행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판단됨. 이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에 부합하는 개정으로 향후 위탁 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승인’에서 ‘협의·보고’로 행정 절차가 완화되는 만큼, 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 제7조의 감사 기능 및 제13조 지도 감독 권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